

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9-83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나, 사업대상 토지의 약 66%가 사유지이며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으로
- 안산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안산시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종합계약(공동발주) 추진
※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(안) 경기도의회(제385회 임시회) 의결(2025. 7. 23.)

법적근거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
 - 시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 필요
-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
 -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 계획 수립 필요

주요내용

- 협 약 명 :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
- 협약시기 : 2025년 9월 중
- 협약기관 : 경기도 ↔ 안산시

○ 주요내용

- 제4조(협약체 구성)

- 명 칭 : "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약체"
- 관련기관 : 경기도(계약담당자 : 재무관), 안산시(계약담당자 : 분임재무관)
- 대표기관 : 경기도

- 제6조(용역의 시행) / 제8조(감독 및 검사)

- 시행방식 : 공동집행방식의 종합계약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수행
- 업무분담 : 공통되는 용역 부분에 대한 책임 및 감독은 공동으로,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 및 감독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담당

- 제7조(용역비 분담)

- 용역비 분담 : 경기도 50%, 안산시 50%
- 기 타 사 항 : 용역비 증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

- 제12조(신의 성실 등 기타 사항)

-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,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
- 상호 협의가 어려워 용역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표기관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비용추계서 : 【붙임 2】

협약서(안) : 【붙임 3】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협약(동의) 안건 점검표

【제298회 안산시의회(임시회) 부대의견】

□ 부대의견

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

- “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”은 전국 단위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로서, 그 중 우리시는 사유지를 66%나 포함하여 대규모 콤팩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특수한 상태이고, 8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도시의 남북을 물리적으로 양분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도시의 기본축을 재편하는 중차대한 사업임.
- 따라서, 본 협약 이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 확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역 공동 발주자 및 용역 수급업체와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함께, 용역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회 보고가 확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